

[]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서

[] 정확조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5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)	
설치장소	처리방법		
처리용량(m ³ /일) 또는 처리대상인원(00명용)	시설설치 완료일		
	사용시작 예정일		
시공자	상호(대표자)	등록번호	
	사무실 소재지	(전화번호:)	

「하수도법」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재질검사성적서 1부[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·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(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)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]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.

처리절차

